

대한민국 제헌 헌법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제헌 헌법)	
종류	헌법 제1호
제정 일자	1948년 7월 17일
상태	폐지 (1952년 7월 7일에 일부 개정으로)
분야	공법
주요 내용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조직과 그 작용 원리를 규정.
관련 법규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원문	헌법 제1호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임시헌장→임시헌법→	
제1호→제2호→제3호→제4호→	
제5호→제6호→제7호→	
제8호→제9호→제10호	
대한민국의 헌정사	

전쟁기념관에 전시 중인 제헌 헌법. 사진은 첫 장이다.

대한민국 제헌 헌법(大韓民國制憲憲法, 영어: First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1]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 국회가 제정하여 1952년 7월 7일, 대한민국 헌법 제2호 개정 전까지 존재한 대한민국의 헌법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호(大韓民國憲法第一號)'라고도 한다. 전문(前文)과 본문(本文) 10장 103조 구성되었다.

제정 과정

미국과 소련의 양 연합군이 한반도에 진주하게 되었다. 이후 북위 38도를 기준으로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군정을 실시하게 되었다.

한반도의 장래 문제는 모스크바 3상 회의와 미소공동위원회를 거치면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5년간의 신탁통치를 통해 완전한 독립을 도모하기로 한 안이 나오게 되었지만 한국인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다. 1948년 2월 27일, UN 총회에서는 총선거를 실시하되, 가능한 지역 내에서만 실시할 것을 결의하였다.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19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제헌 국회가 구성되었다. 제헌 국회는 초대 국회의장에 이승만/대한독립촉성국민회, 부의장에 신익희/대한독립촉성국민회, 김동원/한국민주당을 각각 선출하여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위한 활동을 개시하였다.

동년 6월 1일, 소집된 제2차 국회 본회의를 열어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과 국회법 기초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전형위원[2]을 선출하였고, 이들 전형위원으로 하여금 기초위원 30인을 선출케 하였다.

위원장 : 서상일

위 원 : 유성갑 윤석구 최규각 김옥주 신현돈 김경배

제헌국회는 헌법기초위원회를 조직하여 유진오의 안을 원안으로 권승렬의 안을 참고안으로 하여 헌법 초안을 작성하였다. 서상일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기초위원들은 당초에 내각책임제로 기초하였던 헌법안을 이승만 의장의 의도에 따라 대통령제로 기초 완료하였고, 이 헌법안이 6월 23일 본회의에 상정하고 7월 12일 제3독회 후 제정하여 7월 17일 이승만 의장이 서명/공포함으로써 대한민국 제헌 헌법이 발효되었다.

제헌헌법 공포사

제헌 헌법에 서명하고 있는 이승만 국회의장

3천만 국민을 대표한 대한민국 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하여 삼독토의(三讀討議)로 정식 통과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나 이승만은 국회의장의 자격으로 이 간단한 예식을 서명하고 이 헌법이 우리 민국의 완전한 국법임을 세계에 공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전 민족이 고대전제(古代專制)나 압제정체(壓制政體)를 다 타파하고 평등자유의 공화적 복리를 누릴 것을 이 헌법이 담보하는 것이니, 일반 국민은 이 법률로서 자기 개인의 신분상 자유와 생명, 재산의 보호와 또는 국권, 국토를 수호하는 것이 이 헌법을 존중히하며 복종하는데서 생길 것을 각오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한번 더 이북 동포에게 눈물로서 고하고자 하는 바는 아무리 아프고 쓰라린 중이라도 좀 더 인내해서 하루바삐 기회를 얻어서 남북이 동일한 공작(工作)으로 이 헌법의 보호를 동일히 받으며 이 헌법에 대한 직책을 우리가 다 같이 분담해서 자유활동에 부강증진을 함께 누리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도합니다.

단기 4281년 7월 17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李承晩

주요 내용

1948년 9월 1일 발행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실린 관보 1호

제헌 헌법은 전문에서 3·1 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을 건립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또는 헌장·약헌 등)에서도 3·1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밝힌 것과 함께 살필 때,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도 볼 수 있다.[3]

제헌 헌법 제정 당시 제헌 국회의 헌법기초위원장은 "임시정부 정신을 계승한다는 말이지 임시정부의 헌장이라든지 임시정부의 모든 제도를 계승한다는 말은 아니다"고 했다. 그리고 당시 헌법은 임시정부 헌장의 '개정'이 아니라 별도의 '제정' 절차를 밟은 것이다.[4] 헌법학자인 성낙인 전 서울대학교 총장의 <헌법학>에서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은 어디까지나 정통성의 계승으로 이해되어야지 실정헌법질서상의 적법성의 계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전문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바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그러나 이 법통의 계승은 어디까지나 '정통성'의 계승을 의미하며 실정헌법질서에서 '적법성'의 계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된 바 있다.[5]

제헌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하였는데, 이것은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제정한 임시 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와 내용이 동일하다. 즉,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치체제는 왕정이 아닌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정부형태는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하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제정 초안의 의원내각제의 조항 또한 담고 있어 미국과 같은 순수한 형태의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며 국가원수지만(제51조), 국회에서 대통령 및 부통령을 선출하게 함으로써(제53조) 의원내각제의 총리의 선출과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임명권을 가지며(제69조), 국회에서 제출한 법률안을 거부할 권한을 가진다(제40조). 대통령은 또한 긴급한 경우에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하거나,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제57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1회 중임이 가능하다(제55조).

입법권을 가진 국회는 단원제로, 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제33조). 단 제헌국회의 의원은 헌법에 의한 국회로, 임기는 국회 개회일로부터 2년이다(제102조). 국회는 입법권 외에도 예산안 심의·결정권(제41조), 여러 조약의 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한 동의권(제42조), 국정감사권(제43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정부위원의 국회 출석 및 발언 요구권(제44조), 대통령 및 여러 각료에 대한 탄핵소추권(제46조), 국무총리의 임명시 국회 동의권(제69조) 등의 권한을 갖는다.

법원은 법관으로 조직되어(제76조), 독립된 재판기관의 역할을 한다(제77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다(제78조). 대법원은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 심사권을 갖지만, 위헌법률심사권은 대법원이 아니라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명과 국회의원 5명으로 구성되는 헌법위원회가 갖는다(제81조).

특징적인 점은 사기업에서 근로자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을 균점할 권리가 인정되었다는 것이다(제18조). 또한 제2장에서는 자유권을 비롯하여 사회적 기본권, 참정권 등의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이후의 정치적인 면을 살펴볼 때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존중되지 않은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경향은 수차례의 개정 뒤에도 자주 나타나게 된다.

같이 보기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

각주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제1호 1948. 7.17 제정 및 시행

각 도별로 1인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이러한 법통의 계승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링크

링크

참고 자료

계희열, 《헌법학 상 (신정 2판)》, 박영사, 2005.

김철수, 《한국헌법사》, 대학출판사, 1988.

권영설, 〈한국헌법 50년의 발자취〉, 《헌법학연구》 제4집 1호, 1998, pp. 7~28.

정만희, 〈한국헌법상 정부형태의 변천〉, 《헌법학연구》, 1997., pp. 199~223.

최용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 《헌법학연구》, 2006., pp. 9~34.

재헌헌법(재헌법)은 기존 헌법을 새로 제정하거나 근본적으로 바꾸는 과정을 뜻하는 말로, ‘재’가 ‘다시’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다만 검색 결과에는 ‘재헌법’이 특정 사건·이론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인 사례가 섞여 있어,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헌법 뜻

일반적으로 ‘재헌법’은 기존 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대체하는 ‘헌법 재제정’ 또는 ‘헌법 대대적 개정’의 의미로 이해됩니다.

정치·사회 논의에서는 ‘재헌법’이 권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쓰이기도 하며, 이를 둘러싼 논쟁이 존재합니다.

헌법 개정과 헌법 재제정

헌법 개정은 헌법의 내용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 바꾸는 과정이며, 재제정(재헌법)은 기존 헌법을 새 헌법으로 대체하는 더 근본적인 변화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정확한 뜻을 확인하려면 ‘재헌법’이 언급된 문장 전체(어떤 사건·정책을 가리키는지)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대한민국 국기 대한민국의 헌법

대한민국 국장

대한민국 헌법

大韓民國憲法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제정

1948년 7월 17일

헌법 제1호

현행

1987년 10월 29일 (38주년)

헌법 제10호

링크

홈페이지 아이콘법령

1. 개요

2. 구성

2.1. 전문(前文)

2.2. 본칙

2.3. 부칙

3. 역사

4. 헌법개정안 공고

5. 헌법개정 공포문

6. 비판점

7. 수험과목으로서의 헌법

7.1. 공무원 시험

7.2. 변호사시험

7.2.1. 변호사시험에서의 부속법령

8. 관련 문서

9. 둘러보기

1. 개요[편집]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은 대한민국의 헌법전으로,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한 최상위 법이다.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이므로 대한민국의 어떤 법도 이 대한민국 헌법을 거스를 수 없고, 헌법을 위반하거나 위반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여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서의 법률은 국제법과 헌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을 포함한다.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제헌 헌법 이래 9차례 개정되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민정헌법(民定憲法)[1]이자 경성헌법(硬性憲法)[2]이다. 한국의 법 체계도 대륙법(나폴레옹에게 자극을 받아 정비된 독일법+그 독일법을 이어받아 나름대로 정리한 일본법)을 바탕으로 영미법을 받아들인 절충 형태이니 나폴레옹의 영향을 받았다.

헌법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의 영향으로 인해 개헌된 제10호 헌법이며 유일하게 10년 이상 유지된 헌법임과 동시에, 역대 최장수 헌법이다.

원 표제는 띄어쓰기 없는 '大韓民國憲法'이다.[3][4] 약칭으로 국헌(國憲)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형법 조문이나 계엄령 관련 판례 등에서 국헌문란(國憲紊亂)[5] 등으로 활용되며, 과거 제헌 헌법부터 7차 헌법(유신헌법)까지 대통령의 취임 선서와 관련된 헌법 조항에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라는 식으로 언급되다가 현재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수정되었다.

2. 구성[편집]
대한민국 국장

대한민국
헌법(憲法)

대한민국의 헌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부칙 6개 조를 제외하면 총 10장 130조의 구성인데 이것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가치와 그 동력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 전문(前文)
- 제1장: 총강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3장: 국회
- 제4장: 정부
 - 제1절: 대통령
 - 제2절: 행정부
 -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 제2관: 국무회의
 - 제3관: 행정각부
 - 제4관: 감사원
 - 제5장: 법원
- 제6장: 헌법재판소
- 제7장: 선거관리
- 제8장: 지방자치
- 제9장: 경제
- 제10장: 헌법개정
- 부칙(附則)

내용은 몹시 명료하고 논리적이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6] 흔히들 헌법을 기본권과 통치구조 두 가지로 나누지만 자세히 보면 총강에서 먼저 주권, 국민, 영토를 규정한 후, 국회나 대통령보다 국민을 더 앞세우고 있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는 권리가 먼저 나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입법부)를 설명한 후에야 비로소 최고 통수권자이자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입법부와 행정부가 나온 뒤 마지막으로 사법부가 나오는 등, 이 순서들은 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2.1. 전문(前文)[편집]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7]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유구한~"부터 "~개정한다."까지 모든 내용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만연체를 구사했는데, 제헌 이래 그렇게 해오고 있

다. 즉 헌법 전문의 주어는 '대한국민은'이며, 마지막 목적어와 서술어는 각각 '헌법을', '개정한다'이다. 헌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주체는 바로 국민임을 나타낸 것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다.[8] 특이하게도, 제5공화국 헌법은 "유구한 민족사, 빛나는 문화, 그리고 평화애호의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국민은"이라고 하였다.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3·1 운동은 제헌 이래 모든 개정헌법에서 언급하고 있다.[9]

3·1 운동과 임시정부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간직해 나가야 할 국민의 정체성을 제시한다. 19세기 제국주의 국가들이 범했던 침략적 종족주의와 국수적 행태와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제국과 35년, 구한말까지 포함하면 근 50년간 끈질긴 항일 전쟁을 통해 수립된 정부라는 것을 강조한다.KTV 대한뉴스 제5공화국 헌법까지는 "독립정신"을 거론했으나, 현행헌법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거론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해방 이후인 1948년 9월 1일 발간된 대한민국 관보 1호에도 "대한민국 30년[10] 9월 1일"로 표기한다. 사진 오른쪽 위 날짜를 보자.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4.19 혁명은 제3·4공화국 헌법과 현행헌법이 모두 거론하고 있다.

여기서 불의는 사사오입과 3·15 부정선거를 비롯한 이승만과 자유당의 만행을 뜻한다.

제3·4공화국 때에는 "5·16혁명의 이념"도 거론했으나, 제5공화국 때부터 삭제하였다.

헌법전문에 역사적 사건을 열거하는 타국의 사례로 프랑스 헌법(1789년 인권선언)이 있다.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민주개혁(의 사명)은 현행헌법이 처음 거론한 것이다.

평화적 통일의 사명은 유신헌법 때부터 거론되고 있고, 평화 통일 지향을 나타낸다.

특이하게도 제5공화국 헌법은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거론한 바 있다.

제헌헌법은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는 문언이 있었고, 제3공화국부터 제5공화국 때까지도 비슷한 문언이 있었으나("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등), 현행헌법은 이를 삭제하였다.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이 유지되어 왔으나, 유신헌법만은 이를 삭제하였다.

제헌헌법 때는 "민주주의제도를 수립하여"였던 부분이 제4공화국(유신헌법)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으로 변경하고 제5공화국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로 바꾸었다.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라는 문언은 현행헌법이 추가한 것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을 유지하고 있다.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이라는 문헌은 제5공화국 때 추가되었다.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는 복지 국가의 원리,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는 국제 평화주의를 나타낸다.

"인류공영"은 제5공화국 때 처음 언급하였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헌 이래 거의 같은 표현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헌법 서문의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유의 축복을 보장하기 위하여"에서 영향을 받은 표현으로 평가받는다.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헌헌법 외에는 모두 초두 부분이 "1948년 7월 12일에 제정..."이고, 말미 부분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이다.

8차에 걸쳐 개정한 것을 다시 개정하므로 9차 개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단순한 선언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며, 헌법재판에서 보충적 규범으로 활용되는 등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 헌법에는 국가가 독립유공자들을 예우해야 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 전문의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이라는 문구를 근거로 "국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

니다"(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4헌마859 전원재판부)라고 판시한 바 있다.

2.2. 본칙[편집]

대한민국 국장

대한민국

헌법(憲法)

총 10장 130조로 구성된다. 국가기관에 관해 헌법은 큰 틀을 규정할 뿐이며, 헌법재판소나 대한민국 법원 등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헌법보다는 법원조직법이나 헌법재판소법 등 부속 법령을 찾아보는 게 좋다. 물론 진짜로 법률적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법률을 찾아봄과 동시에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가장 좋다.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도 정부조직법으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회의 경우에도 국회법이 있다.

2.3. 부칙[편집]

부 칙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한다.

②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제3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②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4조 ①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6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3. 역사[편집]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역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헌법개정안 공고[편집]

대통령공고 제94호. 이는 대한민국 제5공화국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제9호 헌법 제58조[11], 제65조[12]에 따른 것이다. 현행 헌법에서도 마찬가지로 각각 제82조, 제89조에 똑같은 규정이 있다. 공고자는 대통령이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은 법률에 따라 공고문에 부서(副署)하였다.

헌법 제1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이에 공고한다.

대통령 전두환

1987년 9월 21일

국무총리 김정렬

국무위원 경제기획원장관 정인용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최광수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이상희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사공 일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정해창
국무위원 국방부장관 정호용
국무위원 문교부장관 서명원
국무위원 체육부장관 조상호
국무위원 농림수산부장관 김주호
국무위원 상공부장관 나웅배
국무위원 동력자원부장관 최창락
국무위원 건설부장관 이규효
국무위원 보건사회부장관 이해원
국무위원 노동부장관 이현기
국무위원 교통부장관 차규현
국무위원 체신부장관 오명
국무위원 문화공보부장관 이웅희
국무위원 총무처장관 장기오
국무위원 과학기술처장관 박공식
국무위원 국토통일원장관 허문도
국무위원 정무장관(제1) 이종률

5. 헌법개정 공포문[편집]

공포문은 다음과 같고, 헌법의 일부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1987년 10월 27일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 헌법개정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전두환

1987년 10월 29일

국무총리 김정렬
국무위원 경제기획원장관 정인용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최광수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이상희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사공일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정해창
국무위원 국방부장관 정호용
국무위원 문교부장관 서명원
국무위원 체육부장관 조상호
국무위원 농림수산부장관 김주호
국무위원 상공부장관 나웅배
국무위원 동력자원부장관 최창락
국무위원 건설부장관 이규효
국무위원 보건사회부장관 이해원
국무위원 노동부장관 이현기
국무위원 교통부장관 차규현
국무위원 체신부장관 오명
국무위원 문화공보부장관 이웅희
국무위원 총무처장관 장기오
국무위원 과학기술처장관 박공식
국무위원 국토통일원장관 허문도

6. 비판점[편집]

제10차 개헌/쟁점 문서도 함께 참고할 것

영미법에 주안을 두는 측에서는 일반 법률에 포함해도 되는 세칙이 너무 많다고 비판한다.

이중배상금지 조항은 논란의 불씨로 남아 있다. 이중배상금지 조항은 박정희 정부 시절 베트남 전쟁 참전 군인들에 대한 배상금을 줄이려는 의도로 국가배상법에 들어간 것이었다. 이후 대법원의 위헌 결정을 받아 없어졌는데, 10월 유신으로 같은 내용을 아예 헌법에 넣어버리면서 현재까지 존속하게 된 것이다. 1987년 9차 개헌 당시 통일민주당이 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였으나[13] 민주정의당과의 협상 끝에 남기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이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이 몇 번 청구되었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대해 위헌심사할 수는 없다며 모두 각하하였다. 이 부분은 개헌을 해야만 수정할 수 있다. 10차 개헌 때 없어질 것이 거의 확실하지만 10차 개헌 자체가 언제 이루어질지 기약이 없어서 문제.[14] 그나마 2024년 12월 10일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유족들의 청구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부분적으로나마 우회할 수 있게 되었다. #

사문화되었다고는 하지만 국가원로자문회의[15] 같은 기구가 과연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가, 또 이러한 기구의 의장이 직전 대통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옳으나 하는 점이 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부분에서 국민의 권리 부분이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결국 법률 또는 헌법재판소의 유권해석에 기대야 하기 때문이다.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16]이라 제대로 된 권력 분립이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17] 특히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3인, 국회의 몫인 3인 중 여당 측이 1인[18],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이 3인을 지명하기 때문에 전체 9인 중 7인, 많게는 8인 정도가 대통령의 성향과 유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금은 해결되었지만, 한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충돌하면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단이 없었다. 주요사항에 대해 법리 해석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꽤 있었고, 서로가 서로의 결정을 무시한 사태도 있었다. 자세한 것은 대법원-헌법재판소 관계 문서 참조. 현재는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으로 개헌을 거치지 않고도 해결되었다.

헌법기관별로 임기가 일치하지 않아 알박기가 발생하는 등 정치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제기된다.

대통령 단임제는 독재를 막는다는 취지는 좋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평가하고 심판할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중임제를 시행하면 정책의 일관성이 좀 더 커지고, 국민의 눈치를 더 보게 되므로 이쪽으로는 개헌 주장은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행 헌법이 제정될 때는 다시 독재정권이 등장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여 국민 사이에서는 그리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민주주의가 확립된 지금에는 오히려 단점이 부각되고 있어 점점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이나 총리가 일관적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제 중임제, 의원내각제, 의원집정부제 등에 과거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전 헌법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지만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대통령을 견제할 수단은 효과적이지 않거나 마땅하지 못하다는 비판[19]이 있다. 이 점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국민여론에 반하는 과도한 권한을 행사할 때, 국민투표를 요구하여 정책실행 여부를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결선투표제가 없는 대통령 선거 방식에 대한 비판이 있다. 이 점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절대다수제로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본다.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작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제대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것에서 각 부분에서의 정부 간 역할이 제대로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당시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한 부분이지만 현재 지방자치제도에서 중앙정부의 간섭이 많아지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약하다는 점과 의회 간 권한의 약화 문제를 겪고 있다.[20]

현행 한글 맞춤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일부 있다.[21] 예를 들어 헌법에는 '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당시 맞춤법에 따르면 옳은 표현이었지만, 1989년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현행 맞춤법에 따르면 '투표에 부칠 수 있다'가 옳은 표현이다. 하지만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22] 더불어 띄어쓰기가 틀린 곳이 여러 군데 있다.

문장들의 표현이 부자연스럽다. 말의 주술관계가 모호하거나, 불필요한 피동형 표현 등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다.

헌법은 엄연히 모든 법의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 최상위 규범이지만, 대놓고 무시당하기까지 한다. 상기한 이중배상금지는 대법원 판례로 '선배상 후보상' 이라는 편법(?)[23]이 제시되었고,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정면돌파 당하기까지 했다.[24]

헌법에 언론, 출판의 자유를 규정하나 이를 제약하는 예외 조항이 많다는 점이 비판 대상이 된다. 언론의 자유 부분에서 예외 조항으로 타인의 명예, 권리, 공중도덕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는데, 공중도덕이 무엇인지 모

호하여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하는 집권자들이 이 조항을 언론 탄압에 쓸 가능성이 있고, 이 예외규정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개정하기도 어렵다.

헌법 제11조 3항의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인해 외국과는 달리 상훈을 수여받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사실상 전무하다. 이 조항은 일본국 헌법 14조의 '영예, 훈장, 기타 영전의 수여는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아니한다. 영전의 수여는 현재 이를 보유하거나 장래에 이를 받을 자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베껴온 수준이다. 하지만, 일본 헌법에 이러한 내용이 있는 것은 일본이 전범국인 것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한 것임에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고려조차 없이 그대로 베껴와서는 지금껏 개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이 때문에 선진국인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수많은 참전용사들이 경제적 궁핍에 고통받고 있는 처참한 현실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부분은 오늘날 동성결혼을 정부에서 공인하지 않는 근거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동성결혼을 긍정하는 측에서는 '성평등'으로 바꾸자는 제안 등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 제110조 제4항은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역대 헌법 중 유일하게 사형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를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그 근거 중 하나로 위 헌법조항이 이미 사형을 형벌의 하나로 예정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이에 사형 폐지론 측에서는 이 헌법조항 자체를 비판하기도 한다.

헌법 제127조 제1항의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 부분은 과학 기술의 필요성을 경제라는 좁은 울타리 내에 갇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과학계의 비판을 받는다. 이 조항 때문에 한국에서의 모든 과학적 연구에 대해 경제적 효과가 입증되어야 한다. 여타 선진국 헌법이 과학에 관한 조항을 다른 분야들과 동등한 위계로 다루는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7. 수험과목으로서의 헌법[편집]

공무원 시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1차 객관식(전 직렬)[P/F]

입법고등고시: 1차 객관식(전 직렬)[P/F], 2차 법제직(필수과목)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 객관식(전 직렬)[P/F]

군무원 시험 : 5급 행정직렬

검찰직 공무원 5급 사무관 승진시험[28]의 필수과목

비상계획관 시험: 법령 I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차 헌법 (행정직군 전 직렬)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헌법(공통필수과목)

경찰 승진 시험

경찰 경력채용시험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 전 직렬

해양경찰간부후보생 일반 직렬: 선택 과목

국회 8급공개경쟁채용시험: 헌법 (전 직렬)

국회 9급공개경쟁채용시험: 헌법 (속기직, 경위직, 방호직, 사서직)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헌법(총강, 기본권파트에 한정. 통치구조 제외)

법원 9급공개경쟁채용시험: 헌법(법원사무직, 등기사무직)

전문직 시험

변호사시험: 공법

법무사시험: 헌법(1차)

출제내용은 헌법 조문(헌정사 포함), 헌법 이론, 헌법 판례[29], 그리고 헌법 부속법령 등이다.

조문: 쉽게 나오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지만, 작성하고 꼬면 골치아픈 부분. 헌법 조문에서 단어 하나를 아주 비슷하지만 완전히 똑같은 의미는 아닌 단어로 바꿔서 오답으로 내는 게 가장 많다. 특히 오만가지 정족수 규정이 존재하는 국회 파트와, 상식적으로 당연한 내용만 나와서 단어 하나 표현 하나를 가지고 함정을 파기 가장 좋은 경제 파트가 가장 어렵다. 헌정사는 어떤 조문이 몇 차 헌법부터 들어갔는지, 특정 통치구조가 어느 시대에 해당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다.

이론: 헌법 및 법학 일반의 중요 개념, 헌법의 기본이념/기본권/통치구조의 주요 목차에 해당하는 이론을 물어본다. 의외로 무난하기 때문에 변별력은 크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판례: 가장 중요한 파트로, 아무리 이론을 잘 알고 있다고 해도 판례는 결국 외워서 대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도 어찌 되었든 시험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파트라서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다. 전체 판례의 한 70% 정도는 개념과 이론을 명확히 이해하면 외우는 것이 어렵지 않으나, 나머지 30% 정도는 서로 비슷한 케이스인데 아주 사소한 이유로 결정이 다르게 나오거나, 결정 자체가 수험생의 상식과 다른 방향으로 나오면서 암기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전체 사건을 알고 나면 엄청 상식적인 결정이지만 한두 문장만 떼서 봤을 때는 엉? 싶은 경우가 결코 적지 않아서, 사안이 복잡하다 싶은 판례는 전체 결정문을 읽어주는 게 이해하기 편하다.

부속법령: 가장 골때리는 부분. 헌법의 각 조문과 연관되어 있거나 헌법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한 법률의 내용을 물어본다. 국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법원조직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지방자치법, 국적법 등 일반적으로 헌법과 관계 있는 법률 하면 떠오르는 법률들이 대표적이지만, 통신비밀보호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보안법 등도 이 카테고리에 포함될 수 있을 뿐더러(주로 판례를 가지고 엮어서 물어본다) 출제자가 마음먹고 내면 거의 아무 법이나 갖다붙여서 문제로 낼 수 있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골치아프다.[30]

7.1. 공무원 시험[편집]

7급 공무원 시험의 경우 행정직군에서 필수적으로 보는 과목인 만큼 대부분의 7급 수험생이 헌법 때문에 어려워한다.[31] 일단 범위 자체가 매우 넓고 자잘하게 외워야 될 부속법령[32]에 매년 쏟아지는 최신판례는 덤이다. 다만 기출회독을 여러 번 한 상태라면 7급 과목 중 공부한 만큼 점수가 정직하게 잘 나오는 효자과목임에는 틀림없다.

2017년부터는 5급 공채시험 1차에도 헌법이 반영되며, 반영 방식은 P/F(60점 이상 득점 시 패스)가 된다. 헌법 60점을 넘지 못한 수험생들은 본계임이라고 할 수 있는 PSAT 점수 경쟁에서 아예 배제되기 때문에[33] 수험생들을 긴장타게 만들었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처음 출제된 5급 P/F 헌법은 7급 공무원 헌법보다도 난이도가 낮았다. 주로 조문의 주요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았고, 판례는 아주 대표적인 것 위주로 출제되었다. 이 때문에 60점만 넘으면 되는 시험에 90점을 넘은 사람이 속출하고 심지어 100점을 받은 사람도 심심치 않게 보였다.

그리고 2018년에 두 번째로 치러진 5급 공채시험 1차 헌법은 2017년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았다. 판례보다는 조문을 중심으로 물어본 출제경향은 전 해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으나, 판례 문제가 거의 없었던 2017년과 달리 판례의 비중이 꽤 높아졌고, 헌법 본 조문 못지않게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등 헌법부속법령의 조문에서 문제를 많이 출제한 데다가, 오답 선지를 극히 지엽적으로 만들어[34] 난이도를 올렸다.

현재 민법과 함께 9급 공무원 일반직 시험에서도 출제하라는 의견이 있는 과목 중 하나이다.

7.2. 변호사시험[편집]

'공법'이라는 과목명으로 행정법과 통합하여 출제된다. 사례형의 경우 제1문(100점)이 헌법 위주로 나오면서 행정법이 조금 섞이고, 제2문(100점)은 그 반대이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서는 대체로 1학년 때 수강하는 기본권론, 통치구조론에 2학년 이후 수강하는 헌법소송법까지 3과목이 기본이 되고 사례/기록 연습 과목이 추가되는데, 헌법소송법은 선택과목인 경우 안 듣는 경우도 많다.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과목에 비해 어떤 쟁점에 대해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결론이 없다는 점으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정답이 정해져 있는 선택형에서는 아무런 맥락 없이 헌법재판소 법정의견 결론을 단순암기해야 한다는 점이 고통으로 다가온다. 반면 사례형에서는 적법요건을 제외하면 판례 결론을 암기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고 설득력 있는 논거만 제시하면 어떤 결론이든 가능하기 때문에, 소위 '글빨'을 탄다는 평이 많다.

로스쿨 헌법 교수들은 변호사시험에 도움이 되지 않는 수업을 하는 경우가 다른 과목보다도 잦고, 대형 로펌 등에 취업하는 데 있어 헌법 성적의 중요도도 낮기 때문에 많은 학생이 헌법을 등한시하는 편이고, 반대로 말하면 기본적인 개념만 숙지하고 이를 사안에 적용하는 부분은 소설(...)을 쓰더라도 어느 정도의 표준점수를 확보하기 쉬워 이른바 '저점방어'를 하기 용이하다고 평가된다. 반면 선택형은 지나치게 지엽적인 조문이나 판례까지도 많이 나오고, 사례 및 기록에서 남들보다 두드러지게 탁월한 논증 능력을 선보이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아 초고득점을 노리기는 매우 어렵다. 이는 함께 공법으로 묶이는 행정법도 어느 정도 공유하는 특성이다.